

■ **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** **고용·산업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**
[별지 제22호의13서식] **<개정 2021. 12. 31.>**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(예술인 종사 사업장)
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	접수일		처리기간	1일
사업장		사업장관리번호		명칭		
		소재지 우편번호()				
		전화번호		팩스번호		
보험사무 대행기관		번호		명칭		
구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보수 변경 월	변경 후 월평균보수	변경 사유	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7						
8						
9						
10						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.

신고인(사용자·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 / []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첨부서류	1.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"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·국내거소신고번호)"란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를 적습니다.
-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 - *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: 전년도 보수총액 ÷ 전년도 종사개월수
 - *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: 취득(고용)일부터 1년간(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÷ 해당 종사개월수

예술인의 보수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
- "변경 후 월평균보수"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.
- "보수 변경 월"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.
- "변경 사유"에는 보수인상, 보수인하,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